#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(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196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:권수정, 김경영, 김경우, 김상훈, 김제리, 김화숙, 박기열, 박기재, 이광호, 이병도, 이영실, 이정인, 이태성, 임종국, 전병주, 조상호, 채유미, 최 선 의원(18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심장병, 암,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이 필수적임. 그러나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채소·과일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.
- 채식은 각종 질병을 예방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채식식단 등의 제공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조성하여,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(안 제2조)
- 나.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
- 다.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- 라.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- 마. 채식에 대한 교육 ·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)
- 바. 채식의 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)
- 사. 채식 음식점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8조)
- 아. 채식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채식"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
  - 2.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
  - 3.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
  - 4.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
- 5.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
- 6. 그 밖에 시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채식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채식 교육·홍보 등) 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.
- 제7조(채식의 날 운영) ① 시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,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8조(채식 음식점 인증) ①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채식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채식 음식점의 정의,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따로 정한다.
- 제9조(채식생활 실천 지원)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 워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1020400000014

## 미첨부사유서(1호)

요 청 인 : 권수정 의원 담당 : 조도형 과장

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

접 수 일: 2021.02.04

회 신 일 : 2021.02.04 내용문의 : 02-2180-7942

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(실태조사), 제6조(채식 교육홍보 등), 제8조(채식 음식점 인증)에 따라 비용 발생
  - 안 제9조(채식생활 실천 지원)에 따라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나, 구체적인 지원의 방법을 알기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추계결과 = 1,610,000천원
  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,610,000천원으로 연평균 322,000천원임
  - 추계의 전제
    -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  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  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 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계
세입	-	_	-	-	-	-	_
	소계(a)	_	-	_	-	-	_
세출	실태조사 비용(안 제5조)	30,000	-	30,000	ı	30,000	90,000
	채식 교육·홍보 등 비용 (안 제6조)	204,000	204,000	204,000	204,000	204,000	1,020,000
	채식 음식점 인증 (안 제8조)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	소계(b)	334,000	304,000	334,000	304,000	334,000	1,610,000
총비용(b-a)		334,000	304,000	334,000	304,000	334,000	1,610,000

- 실태조사 비용 ≒ 90,000천원
  - 실태조사 비용
    - = 30,000천원 × 3회
  - ※ 참고)실태조사 단가(2021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)
  - 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컨설팅 50,000천원
  -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6,500천원
  - 노숙인실태조사 68,040천원
- 채식 교육·홍보 등 비용 = 1,020,000천원
  - 산출방식  $\sum_{i=1}^{5}$  (연간 채식 교육, 홍보 비용)i
    - 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년)
  - 연간 채식 교육·홍보 등 비용
    - = 204,000천원
      - ※ 사업비 지원단가는 2021년 서울시 예산(안)에 제출되었던 '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학교'(채식 관련 교재개발, 교육과정 운영, 정책연구, 홍보 등)사업비 예산 준용하였음
- 채식 음식점 인증 비용 = 500,000천원
  - 산출방식  $\sum_{i=1}^{5}$  (연간 채식 음식점 인증 비용)i
    - 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년)
  - 연간 채식 음식점 인증 비용
    - = 지원단가 × 1식
    - = 100,000천원
      - ※ 사업비 지원단가: 2020년 '채식하기 편한 환경조성'사업비(100,000천원) 준용
      - 서울시는 해당사업을 통해, 채식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한 서울 소재음식점(일반·휴게음식점)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채식 식당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장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 948개 식당에 전달한 바 있음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**8** 02-2180-7942

e-mail: liz1998@seoul.go.kr